

고흥군의회 공고 제2024-36호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제9대 고흥군의 회부터 상설화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 등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간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개선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그 밖의 불명확한 문장과 단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의 개선 시 잔여임기 명확화(안 제5조제2항)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 등을 규정(안 제7조의3)

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3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명확화,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안 제2조 ~ 제3조, 안 제6조~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예고기간 : 2024. 9. 24. ~ 2024. 9. 30.(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회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 2) 전화 : 061-830-5032, 팩스 :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6명이내”를 각각 “6명 이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소관)”을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원심사등”을 “청원심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의회사무과소관”을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체육과 ,”를 “문화체육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개시후”를 “개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임”을 “보임 또는 개선”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 의장선거”를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폐회 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개”를 “2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료되기 전”을 “종료되기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보임 또는 개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7조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보고 한다”를 “보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그 중”을 “그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의 선임)”을 “(위원의 선임 및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임”을 “선임 또는 개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선임”을 “위원”으로, “위원중에서 선임”을 “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5명이상”을 “5명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행한다. 다만,”을 “대행한다. 다만,”으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그 중”을 “그중”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이하”전문가라 한다)”를 “(이하 “전문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보조자”를 “전문가”로, “반하지”를 “위반

되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심사 또는 감사·조사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생략)</p> <p>1. 의회운영위원회 <u>6명</u>이내</p> <p>2. 행정자치위원회 <u>6명</u>이내</p> <p>3. 산업건설위원회 <u>6명</u>이내</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p> <p>1. ----- <u>6명</u> 이내</p> <p>2. ----- <u>6명</u> 이내</p> <p>3. ----- <u>6명</u> 이내</p>
<p>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p> <p>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u>청원심사등</u>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p> <p>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의회운영위원회</p> <p>가. (생략)</p> <p>나. <u>의회사무과소관</u>에 속하는 사항</p> <p>다. (생략)</p> <p>2. 행정자치위원회</p> <p>기획실, 종합민원실, 인구정책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재무과, 여성가족과, <u>문화체육과</u>, 보건소, 분청문화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p> <p>3. (생략)</p>	<p>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 ----- <u>청원심사 등</u>----- -----.</p> <p>② ----- -----.</p> <p>1.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의회사무과 소관</u>----- -----</p> <p>다. (현행과 같음)</p> <p>2. ----- ----- ----- ----- <u>문화체육과</u>, ----- -----</p> <p>3. (현행과 같음)</p>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은 선
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로 한다.

②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
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의
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
서 선거한다.

③ (생략)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
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
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
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
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 개시 후 -----
-----.

② 보임 또는 개선-----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6조(상임위원장) ① -----

----- 1명-----.

② -----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폐회 중-----
-----.

제7조(특별위원회) ① -----
2개 이상-----

-----.

② (생략)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되, 본회의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기간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⑤ ~ ⑥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
종료되기 전-----
-----.

<삭제>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
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
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보임 또는 개선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제1항의 선임은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선임하여,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전까지 선임한다.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7조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 1명 -----

보고한다.

② -----
----- 위원 중 -----

----- 그중 -----
-----.

③ -----

----- 폐회 중 -----

-----.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

----- 선임 또는 개선 -----.

② -----

----- 5일 전 -----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무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할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심사 또는 감사·조사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③ ----- 전문가-

----- 위반되지 -----

-----.

④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심사 또는 감사·조사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국회법」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들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들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위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하 생략)

② ~ ⑥ (생략)

[붙임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